

# 2026학년도 감리교신학대학교 입시 기본계획 (수시, 정시'나')

## 1. 모집인원

모집시기	모집단위	정원구분	전형유형	전형명	모집인원(명)	
수시	신학부  신학 기독교교육학 종교철학 기독교심리상담학	정원내	학생부 (교과)	일반전형	110	167
				추천자전형 (담임교역자, 교목, 교사)	30	
				사회적배려대상자및자녀	10	
				검정고시출신자	17	
		정원외	학생부 (교과)	농어촌학생	4	31
				기초생활수급권자및차상위계층	4	
				특수교육대상자전형	20	
				재외국민과 외국인(2%)	3	
				재외국민과 외국인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학생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제한없음	
정시'나'	신학부  신학 기독교교육학 종교철학 기독교심리상담학	정원내	수능	일반전형	30	30
		정원외	수능	농어촌학생	수시모집 미충원 이월인원	-
				기초생활수급권자및차상위계층		
				재외국민과 외국인(2%)	제한 없음	
				재외국민과 외국인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학생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1. 신학부로 모집 후 2학년 진급 시, 신학전공, 기독교교육학전공, 종교철학전공, 기독교심리상담학전공 으로 배정)
2. 고등학교 이수계열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
3. 수시모집 전형일이 다른 전형의 경우 복수지원이 가능함.
4.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은 정시'나'군에서 추가하여 선발

## 2. 지원자격

### ■ 수시모집

모집시기	전형명	지원 자격
수시	일반전형	가. 2026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나.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다. 기독교세례를 받은 자
	추천자전형 (담임교역자, 교육, 교사)	가. 2026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2021년 2월 이후 졸업자 나. 기독교세례를 받은 자
	사회적배려대상자 및 자녀	가. 2026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2021년 2월 이후 졸업자 나.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다. 기독교세례를 받은 자 라.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 1.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2. 다문화가정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3. 다자녀가정 자녀 - 3명 이상 자녀를 가진 가정의 자녀 4.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순직자 포함)의 자녀 5. 환경미화원의 자녀 6.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7. 농어촌 목회경력(3년 이상(고교재학기간 3년 포함)된 목회자의 자녀 8. 자립지원대상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①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②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③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검정고시출신자	가. 검정고시 출신자 나. 기독교세례를 받은 자
	농어촌학생	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 2조에 의한 도서·벽지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2021년 2월 이후 졸업자 및 2026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며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1.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졸업예정자 포함)까지 학생의 거주지 및 출신학교 소재지가 농·어촌 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인 자 2.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졸업예정자 포함)까지 부·모·학생 모두의 거주지 및 학생의 출신학교 소재지가 농·어촌 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인 자 나. 읍, 면 소재 특수목적고교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 다.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 라. 기독교세례를 받은 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가'항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기독교세례를 받은 자	

	<b>특수교육대상자전형</b>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다. 기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한 상이 및 장애등급자 라. 기독교세례를 받은 자
	<b>재외국민과 외국인(2%)</b>	아래 내용 참고
	<b>재외국민과 외국인</b>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학생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아래 내용 참고

※ 공통 : 기독교세례를 받은 자

## ■ 정시 '나'

모집시기	전형명	지원 자격
정시'나'	<b>일반전형</b>	가. 고등학교졸업자 및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b>농어촌학생</b>	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 2조에 의한 도서·벽지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26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며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1.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졸업예정자 포함)까지 학생의 거주지 및 출신학교 소재지가 농·어촌 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인 자 2.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졸업예정자 포함)까지 부·모·학생 모두의 거주지 및 학생의 출신학교 소재지가 농·어촌 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인 자 나. 읍, 면 소재 특수목적고교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다.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
	<b>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b>	가. 고등학교졸업자 및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가'항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
	<b>재외국민과 외국인(2%)</b>	아래 내용 참고
	<b>재외국민과 외국인</b>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학생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아래 내용 참고

※ 공통 : 기독교세례를 받은 자

### 3.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가. 수시

모집 단위	정원 구분	전형명	선발 방법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 및 배점(%)			실질 반영 비율(%)			
				학생부	면접	기타	학생부		면접	기타
							교과	비교과		
신학부	정원 내	일반전형 추천자전형 사회적배려대상자및자녀	일괄 합산	80 (800)	20 (200)		72	8	20	
		검정고시출신자	일괄 합산		20 (200)	80 (800)			20	80
	정원 외	농어촌학생	일괄 합산	80 (800)	20 (200)		72	8	20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일괄 합산	80 (800)	20 (200)		72	8	20	
		특수교육대상자	일괄 합산	80 (800)	20 (200)		72	8	20	
		재외국민과외국인(2%)	일괄 합산		100 (1000)					

※ 1. 최저학력기준 없음, 2. 검정고시출신자는 성적 80% 반영

#### 나. 정시 '나'

모집 단위	정원 구분	전형명	선발방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배점(%)	
				수능	면접
신학부	정원내	일반전형	일괄합산	80(800)	20(200)
		농어촌학생	일괄합산	80(800)	20(200)
	정원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일괄합산	80(800)	20(200)
		재외국민과 외국인(2%)	일괄합산		100(1000)

※ 최저학력기준 없음

### 4. 학생부 반영방법

#### 가. 학년별 및 요소별 반영비율

모집시기	학생부 반영 총점	학년별 반영비율(%)			요소별 반영비율(%)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	비교과
수시	800점	100	100	100	90	출결 10

※ 교과: 기본점수(최저점) 360점, 최고점수 720점 / 비교과: 기본점수(최저점) 40점, 최고점 80점

※ 비교과 성적이 없을 경우, 교과 성적으로만 산정함.

※ 점수산출 활용지표 순서: 석차등급 > 이수단위 > 원점수

※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는 3학년 1학기까지 성적 반영, 졸업자는 3학년 2학기까지 성적반영

※ 학력인정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특성화 학교 등), 직업교육 및 대안교육 위탁과정은 전체 교과목 반영

**나. 학생부 교과목 반영방법 및 점수 산출 활용 지표**

모집 시기	반영 교과	점수산출 활용지표
수시	① 1학년 국어교과, 영어교과, 사회교과 <b>학년별 각 1과목(3과목)</b> ② 2학년 국어교과, 영어교과, 사회교과 또는 과학교과 <b>학년별 각 1과목(3과목)</b> ③ 3학년 국어교과, 영어교과, 사회교과 또는 과학교과 <b>학년별 각 1과목(3과목)</b>	석차등급

- ※ 1. 지정교과가 없을 경우 ① 사회 또는 과학 교과목 ② 제2외국어 교과목 ③ 학교 지정 교과목 순  
2. 각 학년별 최고 등급 1과목씩 3개 교과 반영(총 9과목)  
3. 진로선택과목은 반영하지 않음.

**다. 학생부 비교내신 반영방법**

**① 검정고시 출신자 비교내신 반영방법**

- 대상: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반영방법: 검정고시 전 과목의 과목별 등급 산정 후 반영
- 검정고시 출신자의 성적은 교과 성적으로만 산정함(비교과성적 미반영)

과목점수	100~98	97~94	93~90	89~85	84~80	79~75	74~70	69~66	65이하
등급	1	2	3	4	5	6	7	8	9

**②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 국내 고등학교 성적: “나”의 학생부 반영방법과 동일하게 반영
- 국외 고등학교 성적: 전 과목의 과목별 등급 산정 후 반영
- 국외 고등학교 성적 등급표

점수 (성취도)	100~98	97~94	93~90	89~85	84~80	79~75	74~70	69~66	65이하
			A <sup>+</sup>	A <sup>0</sup>	A <sup>-</sup>	B <sup>+</sup> , B <sup>0</sup> , B <sup>-</sup>	C <sup>+</sup> , C <sup>0</sup> , C <sup>-</sup>	D <sup>+</sup> , D <sup>0</sup> , D <sup>-</sup>	E, F
등급	1	2	3	4	5	6	7	8	9

**③ 과목별 석차가 없고 성취도만 있는 경우(학업성취도 또는 A~E 등급제)**

- 대상: 2007년 2월 이전 졸업자 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업성취도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 반영방법: 반영 교과목의 과목별 등급 산정 후 반영
- 비교과 성적이 없을 경우, 교과 성적으로만 산정함.

학업성취도	수(A)	우(B)	미(C)	양(D)	가(E)
등급	2 등급	4 등급	5 등급	7 등급	9 등급

**④ 기타**

구분	교과성적 반영방법
교과교육 소년원의 고교과정 이수자	- 과목별 석차 등급이 있는 경우, 최하위 등급 처리 - 고교 재학 중 입소자로 학생부 석차 등급이 있는 경우, 교과별 전 과목 반영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 위탁생 및 공업계 2+1 체제 이수자	- 학생부 과목별 석차 등급이 있는 경우, 교과별 전 과목 반영 - 학생부 과목별 석차 등급이 없는 경우, 최하위 등급 처리

## 5. 수능능력시험 반영방법

모집시기	수능영역별 반영비율(%)			점수산출 활용지표	비고
	국어	영어	탐구		
정시 '나'	40	40	20 (사탐,과탐,직탐 중 최고 1과목)	1.백분위: 국어, 탐구 2.등 급 : 영어	영어 등급을 백분위로 환산 후 반영

\* 한국사 응시 필수

\* 영어등급간 반영점수

등급	1	2	3	4	5	6	7	8	9
반영점수	95	85	75	65	55	45	35	25	15

## 6.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가.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 재외국민 및 외국인 지원자격 기준

구 분	지원 자격 (입학 허용 기간 : 고교 졸업 후 2년 6개월 이내)
재외국민과 외국인 (정원2%)	① 해외에서 3년(1,095일) 이상 근무(재직)/사업/영업을 목적으로 체류한 해외근무자의 자녀로서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② 해외체류기간 ☞ 학생: 학생의 해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학생의 해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2호의 재외국민 및 외국인(정원의 2% 선발) 전형의 지원자격을 표준화함

- 학생 이수기간은 3년 이상으로, 체류기간은 학생의 경우 이수기간의 3/4 이상, 부모의 경우 2/3 이상으로 표준화

나. 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재외국민 및 외국인 지원자격 기준

대 상	지 원 자 격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b>외국인 TOPIK 4급 이상</b>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중등 12년 과정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li> <li>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b>외국인 TOPIK 4급 이상</b>)</li> </ul>

## 7. 기타

가. 수시모집 복수지원 : 수시모집의 특별전형 간 복수지원 가능.(2025학년도와 동일).

나. 학교폭력 조치사항

①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평가 결과와 함께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반영함.